고용노동부 공고 제2016 - 68호

「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·위험성 조사 등에 관한 고시」(고용노동부고시 제2015-4호)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「행정절차법」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공고합니다.

2016년 2월 19일

고용노동부장관

「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·위험성 조사 등에 관한 고시」개정안 행정예고

1. 개정이유

○ '고분자화합물'의 정의와 유해성·위험성 조사제외 기준에 대해 국제기준 및 타 법과의 조화를 통한 국민편의를 도모 하고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·위험성 조사보고서의 첨부 서류 제출생략 조건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○ '고분자화합물' 등 용어의 정의 마련(안 제2조 개정)

- 경제협력개발기구(OECD) 기준 등을 반영하여 '고분자화합물' 등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마련
- 시험성적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는 세부조건 마련(안 제 4조의2 및 별표 1 신설)
 - 신규화학물질의 물리·화학적 특성상 시험이나 시험 결과의 도출이 어려운 경우로서 시험성적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는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성적서의 제출생략이 가능하 도록 함
- 고분자화합물의 유해성·위험성 조사제외 기준 변경(안 제4조의3 신설)
 - 현행 제4조의2를 개정, 위해의 정도가 적다고 인정되어 유해성·위험성 조사가 제외되는 고분자화합물의 기준에 대해 경제협력개발기구(OECD) 기준 등을 반영하여 국제기준 및 타 법과의 조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함
- 재검토기한 설정 방식 변경(안 제10조)
 - 재검토기한 설정을 특정일자 방식에서 일정시점을 기준으로 한 주기적 재검토 방식으로 전환

3. 참고사항

○ 관계법령 : 산업안전보건법 제40조

○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○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

4. 의견제출

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2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(참조: 화학사고예방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고용노동부 화학사고예방과(☎ 044-202-7757/7762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- 나.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, 전화번호, 주소
- 다. 보내실 곳
 - 주 소: (30117)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,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상정책국 화학사고예방과
 - O 팩 스: 044) 202-8094

「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·위험성 조사 등에 관한 고시」개정(안)

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·위험성 조사 등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항제1호 중 ""유해성"이라 함은"을 ""유해성"이란"으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중 ""위험성"이라 함은"을 ""위험성"이란"으로 하며,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고, 같은 항 제4호를 제3호로 하며,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4. "고분자화합물"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화학물질을 말한다.
 - 가. 1종 이상의 단량체단위가 연속하여 반복되는 분자로 이루어져 있을 것
 - 나. 각 분자 내 단량체단위의 반복수(反復數)에 따라 특징적 분자량 분포를 보일 것
 - 다. 세 개 이상의 단량체단위가 적어도 한 개 이상의 단량체단위 또는 다른 반응물과 공유결합을 이룬 분자가 중량비로 50퍼센트 이상일 것
- 라. 분자량이 같은 분자가 중량비로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을 것 제2조제1항제3호(종전의 제4호) 본문 중 ""화학물질명"이라 함은"을 ""화학물질명"이란"으로 하고,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,

- 같은 항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 - 5. "단량체"란 둘 이상의 다른 분자와 결합하여 고분자화합물을 형성하는 화학물질 및 그 화학반응에 참여하는 반응물을 말한다.
 - 6. "단량체단위"란 단량체가 반응하여 형성된 고분자화합물에서 단량체가 반복되는 구조를 말한다.
 - 7. "수평균분자량"이란 고분자화합물을 구성하는 모든 분자들의 분자량을 더한 무게를 총 분자 수로 나눈 값을 말한다.

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4조(유해성・위험성 조사방법) 유해성・위험성 조사는 원칙적으로 단일화학 구조를 가진 신규화학물질을 대상으로 하고, 신규화학물질이 다른 화학물질과의 혼합물인 경우에는 가급적 해당 신규화학물질을 분리, 정제한 후 조사하여야 한다. 다만, 혼합물을 분리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혼합물에 대하여 유해성・위험성 조사를 할 수 있다.

제4조의2의 제목 "(고분자화합물질의 유해성·위험성 조사제외)"를 "(서류 첨부의 생략)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규칙 별표 11의 4 제9호에 따른 "신규화학물질의 물리·화학적특성상 시험이나 시험 결과의 도출이 어려운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"란 별표 1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경우를 말한다.

제4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고,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신규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

자는 제1항에 따라 해당 서류의 첨부를 생략하기 위하여 별표 1에서 정한 조건에 만족함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. 제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4조의3(유해성·위험성 조사제외 물질) ① 규칙 제89조의2제1항 제3호에 따른 "신규화학물질이 아닌 화학물질로만 구성된 고분 자화합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"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
 - 1. 수평균분자량이 1만 이상인 고분자화합물로서 분자량이 1천 미만인 분자의 함량이 5퍼센트 미만이고, 분자량이 500 미만 인 분자의 함량이 2퍼센트 미만인 경우
 - 2. 수평균분자량이 1천 이상에서 1만 미만인 고분자화합물로서 분자량이 1천 미만인 분자의 함량이 25퍼센트 미만이고, 분자 량이 500 미만인 분자의 함량이 10퍼센트 미만인 경우
 - 3. 중량비 2퍼센트 이하의 단량체를 제외한 단량체로 구성된 고분자화합물이 신규화학물질이 아닌 화학물질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 분자화합물은 유해성・위험성 조사제외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.
 - 1. 양이온성 고분자화합물(고체 상태로만 사용되고, 물에 녹지 아니하거나 분산되지 아니하는 고분자화합물은 제외한다)
 - 2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량체가 중량비로 2퍼센트를 초과하여 포함된 수평균분자량 1만 미만인 고분자화합물가. 신규화학물질
 - 나. 법 제37조에 따른 제조 등 금지물질

- 다. 법 제38조에 따른 허가대상물질
- 라. 「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420조에 따른 관리 대상 유해물질
- ③ 제1항에 따른 고분자화합물임을 증명하는 서류는 별표 2와 같다.

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0조(재검토기한) 고용노동부장관은 「행정규제기본법」 및 「훈령・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이 고 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(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)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별표 1을 별표 2로 하여 별지와 같이 하고,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적용례) 제4조의2, 제4조의3 및 별표1의 개정규정은 2016년 5월 1일 이후 신규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부터 적용하다.

[별표 1]

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 · 위험성 조사보고서 첨부서류 제출생략 조건

- 1.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경우 해당 시험성적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.
 - 가. 급성 경구독성 시험성적서: 피부 부식성으로 분류되는 물질로서, 조사 보고서나 제조 또는 취급 방법을 검토한 결과 주요 노출경로가 흡입으로 판단되어 급성흡입독성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는 물질일 것
 - 나. 급성 흡입독성 시험성적서: 피부 부식성으로 분류되는 물질로서, 입자의 크기가 100μm을 초과하는 물질일 것
 - 다. 시험동물을 이용한 소핵 시험성적서: 연간 제조·수입량이 100톤 미만인 경우로서, 복귀돌연변이에 관한 시험결과가 음성인 물질일 것
- 2. 고분자화합물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는 규칙 별표 11의4 제2호에 따른 시험성적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.
 - 가. "산 및 알칼리 용액에서의 안정성" 시험결과 산 및 알칼리 용액에서 안정할 것
 - 나. 해당 고분자화합물이 이 고시 제4조의3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물질로서, 여기에 포함된 같은 조제2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단량체의 잔류함량이 0.1% 이하일 것
 - 다. 해당 고분자화합물이 이 고시 제4조의3제2항제1호에 해당하지 않을 것

[별표 2]

고분자화합물 유해성 · 위험성 조사제외 확인 신청 시 제출자료

- 1. 신청인 정보
- 2. 신규화학물질의 명칭
- 3. 신규화학물질의 구조식
- 4. 신규화학물질의 분자량 관련 정보

(분자량 분포, 수평균(또는 중량평균) 분자량, 평균분자량, 분산도, 분자량 1,000 미만 성분 함량 등 자료 등)

5. 신규화학물질의 단량체단위 중량비(또는 몰비)

단량체 명칭	기존물질번호(또는 Cas No)	함량비

- 6. 외관
- 7. 용도
- 8. 신규화학물질의 순도 및 불순물

순도	
불순물 및 함유량	

9. 기타 참고자료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정(안)
제2조(정의)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	제2조(정의) ①
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	
1."유해성"이라 함은 화학물질의	1. <u>"유해성"이란</u>
독성 등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	
화학물질의 고유한 성질을 말한다.	
2. <u>"위험성"이라 함은</u> 근로자가	2. <u>"위험성"이란</u>
유해성이 있는 화학물질에 노출	
됨으로써 건강장해가 발생할 가	
능성과 건강에 영향을 주는 정	
도의 조합을 말한다.	
3."신규화학물질의 안전보건에	<u><</u> 삭 제>
관한 자료"라 함은 신규화학물	
질 또는 신규화학물질을 함유한	
제제(製劑)에 대하여 물리적・	
화학적 성질, 인체에 대한 유해	
성・위험성, 응급조치사항 등 당	
해 물질에 대한 안전・보건 정	
보를 망라하여 작성한 자료를	
<u>말한다.</u>	
4."화학물질명"이라 함은 IUPAC	<u>3."화학물질명"이란</u>
(International Union of Pure an	
d Applied Chemistry) 또는 CA	
(Chemical Abstracts) 명명법에	
의한 화학물질의 이름을 말한다.	

혅 했 개정(안) 다만, 반응생성물이나 고분자 화 합물인 경우에는 반응을 개시할 당시의 각 화학물질명이나 단량 체명에 기초하여 명명한 이름의 로. 반응생성물이 두 가지 이상 의 화학물질로 혼합된 상태로서 서로 분리할 수 없거나 상업적 목적으로 분리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반응혼합물의 형태로 명명한 이름으로 화학물질명을 대신할 수 있다. <신 설> 4. "고분자화합물"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화학물 질을 말한다. 가. 1종 이상의 단량체단위가 연 속하여 반복되는 분자로 이루 어져 있을 것 나. 각 분자 내 단량체단위의 반 복수(反復數)에 따라 특징적 분자량 분포를 보일 것 다. 세 개 이상의 단량체단위가 적어도 한 개 이상의 단량체 단위 또는 다른 반응물과 공 유결합을 이룬 분자가 중량비 로 50퍼센트 이상일 것 라. 분자량이 같은 분자가 중량

현 행	개정(안)
	비로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
	<u>을 것</u>
5. "전문시험기관"이라 함은 국ㆍ	<u>5. "단량체"란 둘 이상의 다른 분</u>
<u>공립시험연구기관, 「교육법」</u>	자와 결합하여 고분자화합물을
에 따른 대학, 「특정연구기관	형성하는 화학물질 및 그 화학
육성법」에 따른 연구기관,	반응에 참여하는 반응물을 말한다.
「기술개발촉진법」에 따른 기	
업부설연구소 및 이에 준하는	
시험기관을 말한다.	
<신 설>	6. "단량체단위"란 단량체가 반응
	하여 형성된 고분자화합물에서
	단량체가 반복되는 구조를 말한다.
<u><신 설></u>	7. "수평균분자량"이란 고분자화
	합물을 구성하는 모든 분자들의
	분자량을 더한 무게를 총 분자
	수로 나눈 값을 말한다.
② (생략)	② (현행과 같음)
계4고(○웨서 이천서 고치ㅂ그ㅂ	계4고/호퀴서 이청서 고기바버)
제4소(뉴해성·위엄성 소사모고서 작성방법 등) ① 사업주는 신규화	제4조(유해성·위험성 조사방법) 유해성·위험성 조사는 원칙적으
학물질의 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함	로 단일화학 구조를 가진 신규화
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	학물질을 대상으로 하고, 신규화
에 해당하는 자료를 인용할 수 있	학물질이 다른 화학물질과의 혼
다. 이 경우 출처를 명시하여야	
<u> </u>	<u> </u>

했 혅

한다.

- 1.규칙 제81조의3제3항에 따른 유 조사하여야 한다. 다만. 혼합물 해성 · 위험성 시험 전문연구기 관에서 실시한 유해성 위험성 조사자료
- 2.관련 전문학회지에서 게재되었 거나 학회에 발표된 유해성 • 위 험성 조사자료
- 3. 국내외에서 발간되는 「저작권 법 사의 문헌에 등재되어 있는 유해성 · 위험성 조사자료
- 4. 경제협력개발기구(OECD) 회 원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연합기 구에서 인정하는 유해성 위험 성 조사자료
- ② 유해성·위험성 조사는 원칙 ② <삭 제> 적으로 단일화학 구조를 가진 신 규화학물질을 대상으로 하며, 신 규화학물질이 다른 화학물질과의 혼합물인 경우에는 해당 신규화 학물질을 가능한 분리, 정제한 후 조사를 하여야 한다. 다만, 혼합 물을 분리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혼합물에 대하여 유해성 위험성 조사를 할 수 있다.

개정(안)

규화학물질을 분리, 정제한 후 을 분리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곤 란한 경우에는 해당 혼합물에 대 하여 유해성 위험성 조사를 할 수 있다.

혅 궰 개정(안)

제4조의2(고분자화합물질의 유해성 제4조의2(서류 첨부의 생략) ① 규 ·위험성 조사가 제외되는 고분 자화합물질은 수평균분자량이 1, 000 이상으로 양이온을 만들지 는 단량체가 신규화학물질 또는 말한다. 법 제37조에 따른 제조 등 금지물 질, 법 제38조에 따른 허가대상물 질 및 「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 한 규칙」 제420조에 따른 관리 대상 유해물질에 해당되지 않으 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.

·위험성 조사제외) ① 규칙 제89 칙 별표 11의4 제9호에 따른 "신 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유해성 규화학물질의 물리·화학적 특성 상 시험이나 시험 결과의 도출이 어려운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 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"란 별 않고, 고분자화합물질을 구성하 표 1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경우를

1.물 또는 유기용제에 용해되지 <삭 제> 않으며 고분자화합물질에 나트륨, 마그네슘. 칼륨 또는 칼슘 이외 의 금속을 포함하지 않을 것

2. 물 또는 유기용제에 용해되는 <삭 제> 경우에는 분자량 1.000 미만의 성분 함량이 1퍼센트(%) 이하 일 것. 이 때, 수평균분자량이 1 0,000 미만인 경우에는 고분자 화합물질을 구성하는 단량체가 탄소간이중결합, 탄소간삼중결

현 행	개정(안)
합, 탄소질소간이중결합, 탄소	
질소간삼중결합, 아지리딘기,	
에폭시기, 술폰산기, 히드라진	
기, 페놀성수산기 또는 불소기	
를 포함하지 않을 것	
② 제1항에 따른 고분자화합물질	②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신규
임을 증명하는 서류는 별표 1과	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
<u>같다.</u>	는 자는 제1항에 따라 해당 서류
	의 첨부를 생략하기 위하여 별표
	1에서 정한 조건에 만족함을 입
	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
	<u>한다.</u>
<신 설>	제4조의3(유해성・위험성 조사제외
	물질) ① 규칙 제89조의2제1항제
	3호에 따른 "신규화학물질이 아
	<u>닌 화학물질로만 구성된 고분자</u>
	화합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
	정하여 고시하는 경우"란 다음
	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
	<u>우를 말한다.</u>
	1. 수평균분자량이 1만 이상인 고
	분자화합물로서 분자량이 1천
	미만인 분자의 함량이 5퍼센트
	미만이고, 분자량이 500 미만인
	분자의 함량이 2퍼센트 미만인

현 행	개정(안)
	<u>경우</u>
	2. 수평균분자량이 1천 이상에서
	1만 미만인 고분자화합물로서
	분자량이 1천 미만인 분자의 함
	량이 25퍼센트 미만이고, 분자량
	<u>이 500 미만인 분자의 함량이 10</u>
	퍼센트 미만인 경우
	3. 중량비 2퍼센트 이하의 단량체
	를 제외한 단량체로 구성된 고
	분자화합물이 신규화학물질이
	<u>아닌 화학물질에 해당하는 경우</u>
	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
	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분
	자화합물은 유해성·위험성 조사
	제외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.
	1. 양이온성 고분자화합물(고체 상
	태로만 사용되고, 물에 녹지 아
	니하거나 분산되지 아니하는 고
	분자화합물은 제외한다)
	2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
	당하는 단량체가 중량비로 2퍼센
	트를 초과하여 포함된 수평균분
	자량 1만 미만인 고분자화합물
	가. 신규화학물질
	나. 법 제37조에 따른 제조 등 금
	<u>지물질</u>

현 행	개정(안)
	다. 법 제38조에 따른 허가대상 물질 라. 「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420조에 따른 관리
	대상 유해물질 ③ 제1항에 따른 고분자화합물임을 증명하는 서류는 별표 2와 같다.
제10조(재검토기한 3년) 이 고시는 「훈령・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(대통령훈령 제24 8호)에 따라 2018년 1월 25일까지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폐지 또는 개정한다.	제10조(재검토기한) 고용노동부장 관은 「행정규제기본법」 및 「훈령・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(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)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<신 설>	부칙 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발령한 날 부터 시행한다. 제2조(적용례) 제4조의2, 제4조의3 및 별표1의 개정규정은 2016년 5 월 1일 이후 신규화학물질을 제 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부터 적 용한다.